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178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용산예술교육센터를 출연기관인 (재)서울문화재단이 전담 관리·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,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용산구 한강로 3가 63-70
- 사용자 : (재)서울문화재단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409.58㎡, 건물 연면적 4,026.24㎡
- 사용허가 기간 : 2020. 9. 11. ~ 2023. 9. 10.(3년)

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‘용산예술교육센터’는 디지털, 융·복합 등 미래수요에 맞춘 아동·청소년 특화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문화예술활동, 예술교육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무로 운영할 예정

- 이는 서울문화재단 고유사무 수행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 상 면제요건에 충족하며,
- 유상사용 허가의 경우, 문화본부 세출(사용료 관련 출연금 편성)·세입(사용료 징수) 예산 간 상계가 반복되며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(국세) 지출이 발생하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20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'20.7.16.)

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3호

- 심의결과 : '적정' (공유재산 사용료 면제)

※ 작성자 :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전선미 (☎2133-2566)